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정 2011.10. 1 규정 제681호
개정 2014.10.14 규정 제752호
2017. 4.26 규정 제90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 소속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임·직원'이라 한다) 및 민간심의위원 등 부패행위 관련 민간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0.14)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민간심의위원 등 부패행위 관련 민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4.10.14)

제4조(고발주체)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①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 또는 제공한 경우 (개정 2014.10.14)

2. 공금횡령·유용 등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4.10.14)

3. 청탁, 알선 등 부당한 업무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개정 2014.10.14)

4. 범죄내용이 과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금액(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4.10.14)

2.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4.10.14)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금액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 또는 유사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10.14)

4. 채용,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개정 2014.10.14)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등)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및 범죄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

한다.

-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한다.
- ③ 고발은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고발처리상황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고발처리상황부